

【 27 】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6. 4.

제출자 : 양주시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법률 제7664호, 2005. 08. 04. 제정, 2006. 01. 01. 시행)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동법을 적용하는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며
- 1991년부터 조성되어 온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 기금이 약 160억원으로 동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등 동 기금이 충분한 확보 되었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을 축소 조정하여 우리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근거법령을 개정하며 (안 제1조)
- 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조성을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5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축소 조정하고 (안 제3조)
- 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함.
· (제명,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양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양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를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5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시장” 을 “양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을 “「예산회계법」”으로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양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33조 및 <u>지방재정법</u>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u>」----- ----- 및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의 ----- ----- ----- -----. -----.</p>
<p>제3조(투자기금의 조성) ① (생략) ② (생략)</p> <p>1.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의 <u>50퍼센트</u>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 ~ 4. (생략)</p>	<p>제3조(투자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 <u>10퍼센트</u>에 ----- 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운용 관리 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법</u> 제117조제2항 및 <u>지방재정법</u> <u>제5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한다.</p> <p>② (생략)</p> <p>1. ~ 4. (생략) 5. 기타 <u>시장</u>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 ----- ----- 「<u>지방자치법</u>」 ----- 「<u>지방재정법</u>」 <u>제9조제2항</u>의 -----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u>양주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이---</p>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생략)

1. ~ 4. (생략)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1. (생략)

2. 분임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제10조(회계관리) 투자기금 및 사업비에
관한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분임운용관 : 산업경제과장

제10조 (회계관리) -----

「예산회계법」 및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이
-----.